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4 선고 2021가합4017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우, 허다운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9. 2. 소외 회사가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450,000,000원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82,500,000원, 보증기한 2016. 9.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조건은 그 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순번	변경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1	2016. 8. 18.	2017. 9. 1.까지	361,250,000
2	2017. 8. 10.	2018. 8. 31.까지	323,000,000
3	2018. 8. 23.	2019. 8. 30.까지	318,750,000

나. 소외 회사는 2019. 6.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9. 8. 1. 간이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19간회합139)1) 를 신청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9. 9. 1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잔액 320,312,2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9. 9. 19. ‘B는 원고에게 320,513,977원(위 대위변제금 + 위약금 201,720원) 및 그 중 320,312,2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9차전11245)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2015. 4. 12. E으로부터 하남시 F아파트 G호를 임대기간 2015. 6. 11.부터 2017. 8.

10.까지, 보증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E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2017. 7. 27. 33,000,000원, 2017. 9. 11. 297,000,000원으로 나누어 반환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호증, 을 제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B는 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B는 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330,000,000원 중 127,000,000원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1) 주위적 청구 중 2017. 9. 11.자 합계 297,000,000원 및 예비적 청구 중 2017. 8. 30.자 75,000,000원 부분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9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2017. 9. 11. 피고에게 합계 297,000,000원을 증여하였다거나, 2017. 8. 30. H을 통해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B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순환거래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1. 7. 12.자, 주식회사 I에 대한 2021. 7. 13.자, J 주식회사에 대한 2021. 9. 30.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2017. 7. 27.자 33,000,000원과 예비적 청구 중 2017. 9. 13.자 19,000,000원 부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피고에게 2017. 7. 27. 33,000,000원 및 2017. 9. 13. 19,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는 위 52,000,000원을 포함하여 2012. 10.경부터 2017. 9.경까지 200,000,000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B로부터 위와 같이 2017. 9. 13. 19,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7. 10. 10. 및 2017. 10. 17. B에게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B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도 2015. 5. 7.부터 2015. 6. 10.까지 B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가 송금한 위 52,0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된 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B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우회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채권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 일자(2017. 7. 27.부터 2017. 9. 13.)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신용보증사고(소외 회사의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가 발생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2 내지 14,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B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전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 점에 비추어도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는 2019. 6.경부터 D은행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대출이자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소외 회사는 위 금전증여계약

무렵인 2017. 6. 27.부터 2017. 8. 2.까지 사이에 D은행에 대출원금 중 일부로 합계 45,000,000원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②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부채가 2016. 12. 31. 기준 749,534,004원(자본 413,769,370원 대비 181%, 당기순이익 10,389,306원 대비 7,214%), 2017. 12. 31. 기준 1,025,446,896원(자본 453,542,646원 대비 226%, 당기순이익 39,773,276원 대비 2,578%), 2018. 12. 31. 1,194,904,393원(자본 -88,973,185원, 당기순이익 -542,515,831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무제표는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줄 뿐 위 금전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악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③ 기업신용평가업체인 K의 L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기업등급은 2016. 12. 31. 기준 b2) 에서 2017. 12. 31. 기준 ccc3) 으로, 현금흐름등급은 2015. 12. 31. 기준 CR44) 에서 2016. 12. 31. 이후 CR65) 로 각 하락하였고, 2017. 12. 31. 기준 재무제표의 재고자산회전기간, 재고자산회전기간변화량 및 운전자본회전기간에 분석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전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대출원리금의 연체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D은행은 2016년, 2017년 및 2018년 각 여신승인검토를 거쳐 소외 회사에게 대출기한을 각 1년씩 연장해 주었는데, 위 금전증여계약 무렵인 2017. 8. 16. 여신승인검토에서 소외 회사의 신용등급을 B36) 로 평가하였다(2016년 및 2018년의 경우 그보다 높은 B2로 각 평가하였다). 또한 원고도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각 1년씩 연장해 주었는데, 당시 원고 내부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심사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⑤ 소외 회사가 2018. 8. 1.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당시 채권자가 18명이었는데, 2019. 10. 4. 파산신청을 할 당시에는 채권자가 23명으로 증가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은 위 금전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종선, 판사 권슬기, 판사 임세준

[별지 1]

순서	날짜	증여액(원)
1	2017-07-27	33,000,000
2	2017-09-11	100,000,000
3	2017-09-11	100,000,000
4	2017-09-11	97,000,000
총계(원)		330,000,000

[별지 2]

순서	날짜	증여액(원)
1	2017-7-27	33,000,000
2	2017-8-30	75,000,000
3	2017-9-13	19,000,000
총계(원)		127,000,000

- 1) 그 후 2019. 8. 26. 위 간이회생절차 신청은 취하되고 2019. 10. 23. 파산결정(수원지방법원 2019하합248)을 선고받았다.
- 2) 현재 시점에서 채무상환능력에는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 3) 현재 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4) 현금흐름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가능성이 존재함
- 5) 현금흐름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현금흐름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낮음
- 6)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